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 인 천 지 방 법 원

## 제 2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6구합13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교회 |
| 피 고 |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10. |
| 판 결 선 고 | 2017. 3. 31.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9,780,970원, 농어촌특별세 414,790원, 지방교육세 829,58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가. 원고는 [redacted]장로회 B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redacted]구 C 대 59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취득이 원고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2015. 11. 6., 2015. 11. 10., 2015. 11. 12., 2015.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위치한 'D복지센터 사무실'(건축물 면적: 48.26㎡,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1]: 24.52㎡), 'E카페'(건축물 면적: 42.64㎡,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21.66㎡), 지하 1층에 위치한 'F상담센터'(건축물 면적: 56.4㎡,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28.65㎡) 부분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2. 18. 원고에게 취득세 9,780,970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414,790원, 지방교육세 829,580원을 부과 · 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2016. 7. 1. 원

1) '전체 대지면적 596.2㎡ × (건물 중 해당 부분의 면적 / 건물 연면적 1,173.6㎡)'으로 계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위치한 D복지센터 사무실은 원고가 거동이 불편한 지역 노인(재가노인)을 직접 찾아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을 통한 선교 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마련한 공간이었으나 그와 같은 선교 활동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관계로 현재 위 공간은 원고의 교회행정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위치한 E카페는 지역사회에 대한 원고의 선교 활동과 교인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위치한 F상담센터는 원고의 담임목사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상담 및 안수기도를 하거나 교인들의 기도모임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건물 부분(이하 '쟁점 건물 부분'이라 한다)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건물 부분이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2) 쟁점 건물 부분이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관 제2조[2]가 '종교사업(예배 및 선교활동) 및 이에 따르는 교육, 사회복지 사업 등'을 원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2, 3,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건물 부분은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인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고, 설령 쟁점 건물 부분

2) 원고 정관 제2조(목적)
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국내외에 전파하고 이에 따르는 교육, 사회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에 교인들이 출입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가 쟁점 건물 부분을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① 원고 정관 제2조는 원고의 목적 중 사회복지 사업을 예배와 선교라는 종교 목적 사업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에 부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나아가 원고 정관 제8조[3]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만을 원고의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제11조[4]를 통하여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되는 노인대학, F상담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카페 등을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정관에 의할 때 원고의 주되고 본질적인 종교 목적 사업은 예배와 선교라고 할 것이고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D복지센터와 F상담센터, 이용 대상이 소속 교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설시설인 E카페의 운영은 이러한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교 목적 사업 자체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원래 1층의 용도는 공장 및 수위실이었고, 2층의 용도는 종교집회장 및 사무소였으며, 3층의 용도는 일반공장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층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본당(예배실)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1층의 용도를 노인복지시설, 사무소,

---

3) 원고 정관 제8조(기관)
본 교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관을 두고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특별부서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1. 당회: 담임목사와 제직회임원으로 조직하며 본 교회의 최고기관으로서 치리기관인데 예배에 관한 일을 총괄하고, 교회소유 자산의 관리 및 차입행위는 당화의 결의사항으로 당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산의 매도는 당회장의 승인이 있을 때만 매도할 수 있으며 기체가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한 사무를 처리한다(단 치리장로 유고시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하여 처리한다).
2. 제직회: 제직회는 본 교회의 당회원과 집사(서리집사 포함), 권사로 조직하고 당회장이 위임하는 금전출납 사무와 구제 및 경제에 관한 일을 처리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3.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본교회 무흠입교인으로 조직하고 임원소집 및 회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4) 원고 정관 제11조(부설기관)
노인대학, F상담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카페, 음악교실, 체육시설, 어린이선교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고서 거기에다가 G노인대학, D복지센터, E카페를 마련하였고, ② D복지센터는 원고의 대표자인 H이 아닌 H의 처 I을 대표자로, 급여종류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으로 하여 설치신고가 마쳐졌으며, E카페 역시 원고 대표자 H의 처인 I을 대표자로 하여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었으므로, D복지센터와 E카페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법적 운영주체에 있어서도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과는 명백히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다) D복지센터 사무실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 H 개인이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269.12㎡ 부분에 관하여 2014.경 원고로부터 별도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그 무렵부터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재학생으로 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G노인대학(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관상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E카페는 테이블, 의자, 판매대, 계산대, 메뉴판, 커피 등 음료 가공시설을 갖추고서 메뉴별로 2,000원 내지 4,000원의 대금을 받으며 음료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이 아닌 사람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라) 한편 원고의 담임목사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상담 및 안수기도를 하거나 교인들의 기도모임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하 1층의 F상담센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담임목사의 신앙상담 및 안수기도 등을 위한 공간(목양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F상담센터와 바로 연접한 곳에 교인들을 위한 친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F상담센터 내에 신앙상담이나 기도 등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소파, 안마의자, 침대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G노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대학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F상담센터는 신앙상담이나 기도모임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G노인대학 재학생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해 주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마)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예배가 열리는 2015. 11. 22. 일요일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D복지센터 사무실의 경우 오전 예배시간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E카페의 경우 이용객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상담센터의 경우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의 주보에 의하더라도 F상담센터는 예배시간에 운영된 것이 아니라 일요일 오전 예배시간과 오후 예배시간 사이인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운영되었고 주중에는 예배가 없는 화요일 13시 내지 15시에 운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들 시설 모두는 예배시간에는 일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이기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판사 백우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별지)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